

kiri Weekly

2012.12.3 제210호

이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의 규제방안과 시사점

포커스

사망률견인(Mortality Drag)에 대한 소고

금융보험 해설

제3보험의 이해 3: 간병보험

국내금융 뉴스

FY2012 상반기, 보험모집 현황 분석 결과
2012년 3/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둔화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소비지표 개선 추세 지속
유럽 _ 그리스 구제금융 미집행금 지원 합의
일본 _ 8,800억 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
중국 _ 중국, 양로보험 개선 방안 발표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의 규제방안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지난 10월 17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G20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각 금융권역의 시스템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권역의 시스템리스크 완화 방안은 IAIS와 FSB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 IAI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를 규제하는 목적이 글로벌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천명함.
 - G-SIIs의 도덕적 해이 경감, 부도 위험과 그 영향의 완화, 시스템적으로 덜 중요하게 활동하도록 동기 부여, 일반보험회사의 G-SIIs로의 유인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함.
- 이번에 제안된 G-SIIs 규제방안은 크게 G-SIIs에 대한 감독강화와 협력, 질서정연한 청산방법, 추가적 손실흡수를 위한 자본부과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이는 FSB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리스크의 경감을 위한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요소임.
- 이제 G-SIIs의 선정 및 규제방안이 구체화되었으므로 D-SIIs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보험회사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의 선정 및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임.
 - D-SIIs의 경우, 그 선정 및 규제에 있어 국가별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크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국내 보험회사의 부실이 금융 및 실물경제로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 및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1. 검토배경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지난 10월 17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에 대한 규제방안¹⁾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로부터 권한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SIFIs)에 대한 선정기준 및 규제 방안을 금융권역별 국제기구와 논의 중에 있음.²⁾
 - IAIS는 지난 2012년 5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선정방안 초안³⁾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7월 말에 끝낸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G-SIIs 규제방안 초안은 금년 12월 16일까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FSB와의 협의 후, 2013년 4월까지 G-SIIs를 선정할 예정임.

- 지난 5월 IAIS가 제시한 G-SIIs 선정방안 초안은 G-SIIs 선정을 위한 방법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크게 지표에 의한 방법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IFS(Insurance and Finance Stability) 평가기준으로 구성됨.
 - 대형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규모(Size),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글로벌 영업 행위(Global Activity), 비전통/비보험 활동(Non-traditional non-insurance activity),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등으로 측정하고 G-SIIs 선정에 이 지표를 사용함.
 - IFS 평가기준은 전통적 보험사업모형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G-SIIs 선정 기준을 위한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전통적 보험, 비전통적 보험, 비보험적 활동(금융활동)으로 구분하여 이들 활동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함께 고려함(〈표 2〉 참조).
 - G-SIIs 선정 시에는 지표에 의한 방법 및 IFS 평가기준과 아울러 보험회사가 갖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감독자의 정성적 판단도 중요시 됨.

1) IAIS(2012. 10),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Policy Measures",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2) FSB(2010. 10), "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3) IAIS(2012. 5),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Assessment Methodology",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표 1〉 G-SIIs 측정 분류

분류	분류 가중치	지표	지표가중치
규모 (Size)	5~10%	총자산	2.5~5%
		총수입	2.5~5%
글로벌 활동 (Global Activity)	5~10%	해외부문 보험료수입	2.5~5%
		해당국가의 수	2.5~5%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30~40%	금융기관 간 자산	4.3~5.7%
		금융기관 간 부채	4.3~5.7%
		재보험	4.3~5.7%
		파생금융상품	4.3~5.7%
		거대노출	4.3~5.7%
		회전율	4.3~5.7%
		level 3 자산*	4.3~5.7%
비전통 보험 및 비보험 활동 (NTNI)	40~50%	비보험부채 및 비보험 수입	6.7~8.3%
		파생금융상품	6.7~8.3%
		단기자금조달	6.7~8.3%
		금융보증	6.7~8.3%
		변액연금	6.7~8.3%
		그룹내부 약정	6.7~8.3%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5~10%	특정 보험사업부문 보험료	5~10%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를 관찰하기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을 말함.
 자료: IAIS(2012, 5),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Assessment Methodology"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임준환(201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선정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표 2〉 위험가중치

보험	전통적	준 전통적	비전통적
비보험 금융활동	2.5%	12.5%	22.5%
100%			

자료: IAIS(2012, 5),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Assessment Methodology"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임준환(201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선정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그러나 5월에 발표된 G-SIIs 선정방안에서는 추가손실흡수(Higher Loss Absorption) 및 효과적 정리 방안(Effective Resolution) 등에 대한 원칙만 천명되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음.

- IAIS는 G-SIIs 규제방안의 기본 원칙이 보험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 유인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힘.
 - IAIS는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험핵심원칙(ICPs)에 따른 감독 강화, 질서정연한 파산절차 도입, G-SIIs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도입, 그리고 상호연계성이 높은 영업활동 제한 등을 제시하였음.⁴⁾
- 은행권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⁵⁾(BCBS)는 이미 2011년 11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의 선정기준과 추가적인 자본규제 방안을 제시⁶⁾하였으며, 지난 2012년 11월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대한 규제방안⁷⁾도 제시한 바 있음.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28개 은행들이 G-SIB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은행들은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위험가중자산 대비 1.0~3.5%의 보통주 자본을 적립해야 할 필요
 - 글로벌 활동성,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의 측정기준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도를 계산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규제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 감독기관이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부과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은 G-SIBs 평가항목 중 글로벌 활동성을 제외한 4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
 - 어떤 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과 국내은행(D-SIBs)으로 동시에 선정되는 경우 두 가지 추가적 자본 중 큰 것을 적용
- 본고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방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규제방안은 이후 우리나라 보험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보험회사(D-SIIs)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

4) 임준환(201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선정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5)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CBS).

6) BCBS(2011),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

7) BCBS(2010), "A framework for dealing with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2. IAIS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규제방안



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규제의 목적

- IAI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를 규제하는 목적이 글로벌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천명함.
 - 이는 G-SIIs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부도 위험과 그 영향을 완화시키며, G-SIIs가 시스템적으로 덜 중요하게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반보험회사가 G-SIIs가 되는 유인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함.

나. IAIS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규제방안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이 세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도덕적 해이와 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정책을 권고한 바 있음.
 - [감독강화와 협력] SIFI 감독을 위한 보다 강화되고 협조적인 감독방안을 적용
 - [부실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청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납세자 부담 없이 질서정연하게 금융기관을 청산할 수 있는 당국의 능력 향상
 - [추가적 손실흡수 자본 확충] SIFI가 국제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추가적인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
 - 국내 감독당국에 의한 보완적인 거시감독 및 추가적 요건 부과
- IAI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를 규제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FSB가 제시한 바 있는 감독강화와 협력, 부실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청산, 추가적인 손실흡수자본의 세가지 의무요소를 포함하는 안을 제시함.
 - 이 규제방안은 비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진 규제당국을 포함한 규제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함.

〈감독강화 방안〉

- G-SIIs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은 IAIS 보험핵심원칙(ICPs), FSB 감독 강화 및 효과(SIE) 권고안⁸⁾,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연결기준의 그룹감독과 강화된 유동성 계획을 강조하고 있음.
- IAIS는 G-SIIs 감독에 있어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자의 직접적 감독권한 보장을 통해 그룹단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자회사의 비전통비보험(NTNI)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보험그룹의 자회사를 통한 비보험 활동이 보험권역 시스템리스크의 대표적 유발원인으로 지적되고, 이들 활동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G-SIIs 감독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함.
- 보험그룹은 비전통비보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리스크경감계획(SRRP: Systemic Risk Reduction Plan)을 만들어 실행해야 하며 감독자는 SRRP의 개발 및 이행을 감독하여 NTNI 활동 및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경감시켜야 함.
 - SRRP는 보험그룹의 NTNI 활동을 지주회사에서 자회사 형태로 분리시키고 그 활동 및 그로 인한 리스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 SRRP의 시행은 전통적 보험활동을 비전통비보험 활동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험그룹을 시스템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통해 보험그룹의 투명성, 독자성, 청산가능성을 높여 G-SIIs에 대한 감독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SRRP 시행을 통해 보험그룹의 특정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영향이나 확률의 감소를 기대
 - 활동의 특성이 갖는 시스템적 중요성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금지하여 다른 보험회사가 유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거

8) FSB(2010), "Intensity and Effectiveness of SIFI Supervision".

- SRRP의 시행방법은 직접적인 금지 및 제한이나 특정 활동에 대한 사전승인, 시스템 리스크 분산에 대한 요건 충족, 그리고 전통적 보험활동과 그 외 활동의 분산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방안이 있음.
 - 시스템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예: CDS 등에 대한 특정 금융보증 발행 금지
 - 특정활동 사전승인의 예: NTNI 활동에 대한 그룹내부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승인
 - 시스템 리스크 분산에 대한 요건 충족의 예: 보증이 들어 있는 변액연금 같은 NTNI 활동 관련 그룹 내부 재보험

- 이처럼 그룹 내의 전통적 보험활동으로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전통비보험(NTNI) 활동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경우 이들 활동에 맞추어 목표된 HLA(targetted HLA)를 부과할 수 있음.
 - 목표가 정해진 HLA와 함께 사용됨으로서 NTNI 활동으로 인한 부실 또는 실패의 영향을 시스템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낮추고 G-SII의 청산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단, 감독당국은 G-SIIs가 NTNI 활동의 분리를 통해 규제받지 않는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피해야 하며, 그룹단위 감독의 맥락에서 관련 감독자 간의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효과적인 청산 방안〉

- 2011년 11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적 청산 기준인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청산을 위한 핵심 요소⁹⁾(Key Attributes)”를 발표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파산 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요건들을 정하였음.
 - 위기관리그룹(CMGs: Crisis Management Groups)의 설립, 회복 및 청산 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의 구체화, 청산평가, 기관별 국경 간 협조협약의 채택 등임.

9)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IAS는 FSB의 금융기관 청산의 핵심요소에 기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보험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G-SIIs 청산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NTNI 활동을 전통적 보험활동으로부터 분리하는 절차와 계획
 - 전통적 보험활동을 하는 보험회사의 청산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기존 계약의 유지 방안
 - 각 나라 별 계약자 보호 및 예금보험제도의 존재

- G-SIIs의 효과적인 정리절차를 마련하면 시스템위험이 없이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고, 계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청산대상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의 청산 가능
 - 필수적인 경제적 기능의 유지를 통한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가 손실을 흡수
 -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
 - 순조로운 청산을 막는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

〈추가적 손실흡수 방안〉

- G-SIIs에 대한 추가손실흡수(HLA: Higher Loss Absorption) 능력을 위한 자본은 기존 미시건전성을 위한 자본요구에 더하여 시스템리스크의 유발에 따른 추가적 자본을 요구하는 의미로 그룹단위 또는 회사단위에 대해 부과가 가능함.
 - G-SIIs가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이 큰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서 감독자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HLA 부과방식으로는 분리된 비전통비보험(NTNI) 활동에 대한 부과와 NTNI 활동의 분리여부에 상관 없이 보험그룹에 부과하는 2단계 부과방식이 제안됨.
 - (1단계) 비전통·비보험(NTNI) 활동이 다른 보험사업에서 효과적으로 분리된 경우, NTNI 분리 법인에만 적절하게 목표된 HLA(targeted HLA) 자본 부과
 - (2단계) NTNI 활동의 분리여부는 상관없이 평판리스크 등 G-SIIs 차원의 HLA 요구량을 평가하여 부과되 NTNI 활동을 분리한 그룹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HLA가 기부과된 사실을 고려하여 그룹 HLA 요구량 설정을 조정

- 또한 국가단위에서 다른 형태의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한 자본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IA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지급능력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조화된(Partially harmonized)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11년 11월에 글로벌 보험그룹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과정에서 지급능력규제에서 자본에 관한 요소는 부분적으로 조화된 접근법을 취하기로 하였음.
- HLA는 G-SIIs의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여 보험핵심원칙(ICP) 17의 요구자본인 PCR(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하는 수준의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이 됨.
 - PCR은 유사시에도 준비금이 충분하여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일정기간 가능하므로 자본적 정성 측면에서의 감독당국 개입이 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자본량
 - 이 같은 방식은 각 국가의 지급능력 감독기준의 연장선상에 있어 일관적이며 향후 지급능력규제의 국제적 수렴도 고려한 것임.
- HLA 추가자본(HLA uplift)의 적용은 현재 지급능력 규제에 기반한 접근법과 부외항목 포함 전대차대 조표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음.
 - 현 지급능력규제에 기반한 접근법은 PCR 자본에 10-30% 추가 자본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함.
 - 이 방식의 장점은 다루기 쉽고 현 방식과 일관적이라는 것임,
 - 단점은 국가 간 PCR의 불일치로 왜곡 발생이 가능하고 과대/과소 자본계상 문제가 발생하며, NTNI의 개념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있음.
 - 부외항목을 포함한 total balance sheet(자본항목은 제외) 접근은 기존의 자본보다 HLA를 위한 0.5-1.5%를 추가하는 방식임.
 - 장점은 보다 국제적이고, 회계방식 간 비교가 가능하며, 국가 간에 일관되고 비교가 용이
 - 단점은 경제적 자본에 기반하지 않고, 리스크에 덜 민감하며, 건전한 보험회사에 페널티를 주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향후 일정〉

■ IAIS는 G-SIIs 규제방안의 시작 시점은 FSB와 감독당국이 공개적으로 특정 보험회사를 G-SII로 지정하고 개별 G-SII에 대해 감독당국이 요구된 정책방안을 이행하는 절차를 시작하면서부터임.

● 구체적인 주요 일정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G-SIIs 규제방안 주요 일정

주요 이행 시점	이행활동
2013년 4월	첫 번째 G-SIIs 지정(이후 매년 11월에 지정)
2013년부터	감독강화 및 협력안 시행
2013년 말	제안된 HLA 방안 구체화
G-SIIs 지정 후 12개월 내	위기관리그룹(CMGs) 설치
G-SIIs 지정 후 18개월 내	다른 청산방안 완성
G-SIIs 지정 후 18개월 내	시스템리스크경감계획(SRRP) 완성
G-SIIs 지정 후 36개월 내	SRRP 이행 평가
2014년 11월	G-SIIs 매년 지정 (HLA는 2019년까지 미적용)
2017년 11월	2016년 자료를 활용, G-SIIs 지정 (HLA는 2019년부터 적용)
2019년 1월	HLA 요건 적용

3. G-SIIs 규제방안 평가와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 IAIS의 G-SIIs 규제방안은 비전통비보험(NTNI) 활동의 분리문제와 HLA의 부과방식 등에 있어 보다 정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NTNI 활동을 전통적 보험활동에서 분리하는 구조적인 감독방안의 도출은 다양한 보험회사의 조직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임.
- 그러나 NTNI의 분리는 보험그룹 조직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감독접근성을 높인다는 면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며 완벽하지 않아도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식별하려는 시도는 중요함.
-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사 지급능력체계의 부재와 국제회계의 차이로 인해 특히, 그룹단위 HLA 부과와 관련된 국가 간 규제차익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복잡할 수 있음.

- 현재 IAIS 내부적으로도 목표된 HLA 부과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에도 그룹단위 HLA의 추가적인 부과가 시스템리스크의 경감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NTNI 활동에 대해 목표된 HLA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NTNI의 명확한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과 그룹단위에서의 평판리스크 등 HLA의 그룹단위 추가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여전히 존재함.

- IAIS의 G-SIIs 선정기준 및 규제방안은 전통적인 보험영업활동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사업모형이 다양화할 경우 G-SIIs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국내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보험영업활동을 주로 영위하고 지급 결제 등을 통한 상호연계성이 미미하며 비전통비보험 영업활동의 비중이 매우 낮아 G-SIIs로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보험회사가 G-SIIs로 지정되는 경우, 국내 감독당국은 주재국 감독자로서 강화된 감독 및 협력 등을 통한 G-SIIs 감독방안의 이행을 담당해야 함.
 - 국내에 현지법인 또는 지점 형태로 영업 중인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 그 규모나 글로벌 활동 등의 측면에서 G-SIIs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국내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보험회사(D-SIIs)의 지정 및 규제와 관련됨.
 - 은행권역의 예를 따라 보험권역에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보험회사(D-SIIs)에 대한 규제방안 논의도 앞으로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 및 정책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은행권 SIFI 논의과정을 통해 D-SIIs 선정기준도 글로벌 활동 지표를 제외하고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비전통비보험 활동을 기준지표로 선정하되 보험사업모형의 특수성과 특정 국가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D-SII 선정 및 규제는 시스템적 중요도에 대한 판단에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감독자의 재량권이 크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조화된 규제를 지향하는 G-SIIs 규제와는 차이를 보임.
 - G-SIIs 선정방법은 시스템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항목과 그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규제방법도 국제적 규제차익의 방지 차원에서 국내 감독자의 재량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요소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보험회사에 대한 추가적 자본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에서 한 보험회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회사와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
 - 국내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보험회사의 소속 대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소유지배구조 상의 위치라든가 자산 또는 수입보험료의 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과 대체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해야 함.
- D-SII로 지정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G-SIIs 규제와 같이 감독강화 및 협력, 부실 또는 실패 시의 회생 또는 청산, 그리고 시스템리스크에 따른 추가적 자본부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스템리스크가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감독강화방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그룹내 부거래(Intra-Group Transactions)를 통해 보험회사의 부실이 그룹으로 전이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재보험사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대체가능성 문제를 고려하여 부실 또는 실패 발생 시 회생 또는 청산에 따른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리스크에 따른 추가적 자본부과는 IAIS의 ComFrame 논의 등 그룹단위 감독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수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kiri](#)